

입학전형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

제 정 : 2021. 08. 20.

제1조(목적) ① 이 지침은 학사내규 제8조(입학전형관리위원회·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)에 근거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학생의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의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교학지원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의 위촉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3조(임기)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4조(기능) ①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입학 전형의 시행 관한 사항
2.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
3.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에 대한 사항
4. 대학입학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
5. 대학입학전형결과 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
6. 기타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

제5조(회의) ①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사무관장)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사무는 입학업무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.

제7조(기타)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,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